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2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1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2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)

가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권한을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고, 주민등록증 일제정신으로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·발급함에 따라 용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규정 삭제 (안 제2조제1호)
-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2조제4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